

◎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231호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9-354호(2019.07.05.)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의왕초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(2차)을 승인 고시합니다. 관계서류는 경기도 의왕시청 도시개발과(031-345-2802)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의왕사업본부(02-6177-4563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2023년 05월 02일

국토교통부장관

의왕초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(2차) 승인

□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

1. 지구계획의 개요(변경없음)

가. 명 칭 : 의왕초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

나. 위 치 :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, 삼동 일원

다. 면 적 : 390,397.8㎡

라.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

-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(2016. 06. 29)에 따라 신속한 개발을 통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중산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하고, 계획적 개발을 통한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함

2. 시행자의 명칭,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(변경)

가. 명 칭(변경없음) : 한국토지주택공사

나. 소재지(변경없음) :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

다. 대표자 성명(변경)

- 지정 : 변창흠

- 변경 : 이한준

3.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(변경)

가. 사업기간(변경)

- 지정 : 2016. 06. 29(지구지정 고시일) ~ 2023. 06. 30

- 변경 : 2016. 06. 29(지구지정 고시일) ~ 2024. 09. 30

나. 재원조달계획(변경없음) :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

4. 토지이용계획 및 개략설계도서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5. 인구·주택 수용계획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6. 교통·공공·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7.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8.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(변경없음) : 게재생략